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5. 11.(월) 09:00	담당부서	
담당과장	김기동 042-481-7830	담당자	이승희 사무관 042-481-7832

항공기 중단 대응 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 코로나19 극복 지원위해 적극행정지원위 논의 거쳐 결정-

지난해 A연구원은 연구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직업용구로 들여왔다. 1년간 사용이 끝나면 그대로 되돌려 보낼 것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증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덕에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돼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 받은 관세 등 7천7백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연구원과 같은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 A.T.A. 까르네 :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

○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 * WCO 권고(‘20.3.20) : COVID-19 확산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가 엄격한 검역 및 잠금조치, 우편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일시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재수출의 지연이 전적으로 전염병(COVID-19)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A.T.A. 까르네 절차의 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
-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 A.T.A. 까르네 가입국 현황(78개국)

A.T.A. 까르네 가입국 현황(78개국)

그리스	모리셔스	슬로베니아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몬테네그로	싱가포르	칠레
네덜란드	몰도바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몰타	아이슬란드	카타르
뉴질랜드	몽골	아일랜드	캐나다
대만	미합중국	안도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바레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벨기에/룩셈부르크	알제리	타이
독일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터키
라트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국	튀니지
러시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레바논	브라질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이란	폴란드
리투아니아	세네갈	이스라엘	프랑스
마다가스카르	세르비아	이탈리아	핀란드
마카오	스리랑카	인도	헝가리
마케도니아	스웨덴	인도네시아	호주
말레이시아	스위스	일본	홍콩
멕시코	스페인	중국	
모로코	슬로바키아	지브롤터	